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편집자 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27호) 개정 주요 내용

- 공포일 : 2014. 11. 14, 시행일 : 2014. 11. 15.
-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를 한 번 인정받은 건설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종 추가 시 1회에 한하여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 인정
 - 15년 이상 건설업 영위
 -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함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대상 공공기관 및 공개 방법(제34조의3 신설)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별표2)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인정 범위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1. 과 3. 은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 득자 중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규조문 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27호, 2014.11.14., 일부개정]
<p>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생략)</p> <p>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 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 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 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 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 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p> <p>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 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p> <p>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 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p> <p>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 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p> <p>〈신 설〉</p> <p>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p> <p>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멸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멸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신 설〉</p>	<p>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p>〈신 설〉</p>	<p>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멸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p>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0호) 개정 주요 내용

- 공포일 : 2014. 11. 14, 시행일 : 2014. 11. 15.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공공공사 저가낙찰 기준마련(제29조제4항 신설)
 - 공공공사 저가낙찰 시 하도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저가낙찰 기준 마련
 - 공공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규조문 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2014.11.14., 일부개정]
<p>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③ (생략)</p> <p>④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p> <p>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 2015년 1월 1일</p> <p>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2015년 1월 1일</p>